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95
----------	------

발의연월일 : 2024. 6. 28.

발의자 : 김선교 · 박수민 · 박준태

이인선 · 이현승 · 서일준

구자근 · 김상훈 · 박충권

윤상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 간(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범죄에 대하여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이른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고, 1953년 제정 형법에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이르고 있음.

그러나 가족 및 친족관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그 형태 또한 다양해지면서 기존 친족상도례 적용이 국민 상식과 법감정,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음. 특히 최근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됨으로써 시대착오적 법조항이라는 비판이 있음.

또한 최근(24.6.27.)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 관련 규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음.

이에 친족에 대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328조, 제365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328조(친족 간의 범행에 대한 고소)

제32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65조(친족 간의 범행)

- ①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 간에 제328조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족 간 범행의 형 면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저지를 범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328條(親族間의 犯行과 告訴)</p> <p>① 直系血族, 配偶者,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配偶者間의 第323條의 罪는 그 刑을 免除 한다.</p> <p>② 第1項以外의 親族間에 第323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p> <p>③ 前2項의 身分關係가 없는 共犯에 對하여는 前2項을 適用하지 아니한다.</p> <p>第365條(親族間의 犯行) ① 前3條의 罪를 犯한 者와 被害者間에 第328條第1項, 第2項의 身分關係가 있는 때에는 同條의 規定을 準用한다.</p> <p>② 前3條의 罪를 犯한 者와 本犯間에 第328條第1項의 身分關係가 있는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但, 身分關係가 없는 共犯에 對하여는 例</p>	<p>제328조(친족 간의 범행에 대한 고소) ① <삭 제></p> <p>②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365조(친족 간의 범행) ①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 간에 제328조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② <삭 제></p>

외로 한다.